#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9389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057호)	강준현의원	2024.10.30.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12.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519호)	박덕흠의원	2024.11.1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12.26.)

- 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2.27.)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3.6.)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은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 질오염의 우려가 적어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는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전 일정 기간 농지로서 의 형상·기능을 유지한 채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직불금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급대 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가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 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1호다목).
- 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된 농지에 한해 직불금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등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 역의 토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 지
-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 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 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생 략)	농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u>.</u>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	1
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u> 농지등에서 「친환경농어</u>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u>」</u>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
	<u>는 경우</u>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2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 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 를 거친 <u>농지(다른 법률에 따</u>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 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u><신 설></u>

<신 설>

\_\_\_\_\_

\_\_\_\_\_

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 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 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제14조제2항 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 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 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 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
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
	단지의 토지
<u>&lt;신 설&gt;</u>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
	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
	<u>발지구의 토지</u>
<u>&lt;신 설&gt;</u>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